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범죄피해재산의 필요적 몰수·추징 등〉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28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별표]	11
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제23조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10. 10.
3. 회 부 일 : 2025. 10.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진화하는 등 전문화되었고, 범죄 건수도 증가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동기인 범죄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고, 박탈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다단계판매 방법 기망 사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가 범죄 피해재산을 몰수·추징 및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으로 개별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여부가 상이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원은 몰수·추징 대상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실무상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의3에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출석요구, ▲서류 등 제출요구,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요청,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상의 몰수·추징에는 위 조문이 준용되지 않아 범죄수익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범죄피해자산 확보 및 피해자 환부를 위하여 ① 범죄피해재산 필요적 몰수·추징, ② 범죄피해재산 추정(범죄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강제수사 규정 준용 규정을 각 도입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 제10조의3의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범죄피해재산의 산정에 있어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6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생략) <u><신설></u>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법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몰수·추징 집행 및 처분에 있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u><신설></u>	

현행	개정안
② · ③ (생략) <신설>	31)을 준용한다.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조의2(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한다.

- 1) 범죄수익규제법 제10조의3(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치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③ 검사는 제1항의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패재산 몰수법”)은 몰수·추징·환수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부패범죄’²⁾를 별표에 규정하고,

부패재산 중 그 범죄행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³⁾으로 규정하면서,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환부⁴⁾하는 특례를 두

2)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 별표는 참고자료1 참조)

3)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나.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제5조(추징) ①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4)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있음⁵⁾.

□ 개정안은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현행법상 임의적 몰수·추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법 하에서는 몰수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개별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상이해지는 문제가 있음.

필요적 몰수·추징을 도입할 경우,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원의 판단범위가 한정되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몰수 및 피해자 환부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음.

○ 참고로, 「형법」 각칙상 뇌물죄(제134조), 아편에 관한 죄(제206조), 배임수재죄(제357조)의 경우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고⁶⁾, 재산에 관한 몰수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6조⁷⁾와 「공무원범죄에 관한

5) 이진국,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일감법학 제23호」, 2012, p.93, 홍찬기, “조직적 사기범죄 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부”,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7권 제3호」, 2015, p.165

6) 「형법」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06조(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7)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물수 특례법」 제3조·제6조⁸⁾는 각각 불법수익등과 불법재산에 대해 필요적 물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82조⁹⁾ 등 일부 개별법에서도 필요적 물수·추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이 범죄피해재산 중 특정사기범죄 즉, 「형법」 상 사기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하는 죄(상습범 포함) 중¹⁰⁾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¹¹⁾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입법례에서 특정 목적 또는 대상에 한정하여 필요적 물수를 규정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구조로 입법이 가능해 보임.

하는 재산은 물수한다. (단서 생략)

1. 불법수익

2.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16조(추징)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수하여야 할 재산을 물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물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追徵)한다.

- 8) 「공무원범죄에 관한 물수 특례법」 제3조(불법재산의 물수) ① 불법재산은 물수한다.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물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물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 9) 「관세법」 제282조(물수·추징) 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물수한다.

- 10)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 다만,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시 법원은 몰수 대상 물건의 중요성, 피해자의 법익침해 정도, 재범 및 재유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몰수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되므로 사건별 구체적 타당성을 다소 제약할 우려가 있을 것을 보임.

□ 다음으로 안 제6조의2는 몰수·추징 대상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범죄피해재산의 산정 시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으로, 조직적 범죄를 통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추적이 어려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특정사기범죄에 있어 범죄행위와 몰수대상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음.

○ 참고로, 범죄수익규제법¹²⁾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죄(제11조), 아동·청

12) 범죄수익규제법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소년 매매행위죄(제12조)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등 죄(제15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제14조) 및 허위영상물 등 반포죄(제14조의2)에 대해 입증책임 완화 규정을 두고 있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¹³⁾,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¹⁴⁾ 등에서도 불법수익 또는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입증책임을 완화할 경우 피고인측이 재산의 출처 또는 형성과정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므로¹⁵⁾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정사기범죄는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범죄추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및 범죄피해재산 추정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

1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7조(불법재산의 증명) 특정공무원범죄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재산의 입증)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죄의 범행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또는 법령에 기한 급부의 수령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정치자금 등의 금액·재산취득시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불법정치자금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등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5) 박미숙, “몰수특례법상 불법재산의 추정과 법치국가적 한계”. 형사정책연구(제15권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p.169-170.

로 보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제약할 우려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법무부는 ① 범인, 피해·기소 시기, 법원 등에 따라 환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적 몰수·추징이 필요하며, ② 현행 범죄수익규제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의 경우 범행기간 내 취득 재산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상당 개연성만 인정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사기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수익 추정 조항이 필요하며, ③ 범죄 피해재산 환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범죄수익규제법의 몰수·추징 목적 조치 조항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자료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별표]

부패범죄(제2조제1호 관련)

1.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죄
 - 가.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 나. 제2편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5조의 죄
 - 다.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 라.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2. 「형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한 공무원 의제에 따른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 각 목의 죄
 - 가.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 나.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 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6. 「국민투표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죄
7.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3조까지 및 제235조의 죄
8.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10.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의 죄
1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3조 및 제94조의 죄
12. 「상법」 제630조, 제631조 및 제634조의2의 죄
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646조, 제655조 및 제656조의 죄
15. 「경륜·경정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죄
16.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
18.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 및 제95조의2의 죄
19. 「고등교육법」 제64조제2항제2호의 죄
20. 「공인회계사법」 제22조제3항 및 제53조제1항의 죄
2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의 죄
22. 「근로기준법」 제9조 및 제107조의 죄
2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70조제2항제2호의 죄
24. 「보험업법」 제201조 및 제203조의 죄
2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9조 및 제60조의 죄
26.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및 제99조제2항제3호의 죄
2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8조 및 제59조의 죄
28. 삭제 <2016.12.20>
29.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죄

[참고자료 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제23조

제23조(범죄의 수익의 세탁)

1. 각 당사국은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 가. (1) 해당 재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위법한 취득원을 은닉 또는 가장할 목적으로 또는 전제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자가 그 행위의 법적 결과로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재산을 전환 또는 이전하는 행위
 - (2) 해당 재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실제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 또는 소유권이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
- 나. 자국 법체계의 기본 개념에 따라,
 - (1) 해당 재산을 수령하는 때에 그것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을 취득·점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 (2) 이 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참가·공모·음모·미수·방조·교사·조장·조언하는 행위
2. 이 조 제1항의 이행 또는 적용상,
 - 가.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을 최대범위의 전제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 나. 각 당사국은 적어도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전제범죄로서 포함시킨다.
 - 다. 나호의 목적상, 전제범죄는 해당 당사국의 관할권 내외에서 실행한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당사국의 관할권 밖에서 실행한 범죄는 관련 행위가 실행된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범죄가 되고 그러한 행위가 이 조를 이행 또는 적용하는 당사국에서 실행되었더라도 그 국내법에 의하여 범죄가 되는 때에만 전제범죄를 구성한다.
 - 라. 각 당사국은 이 조를 시행하는 자국의 법률 및 그러한 법률의 추후 변경된 내용의 사본 또는 그 설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 마. 자국의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가 전제범죄를 실행한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함을 규정할 수 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00100&bid=23&tag=&act=view&list_no=11212&nPage=)

문 의 처
02)6788-5070